

친애하는,

사회권규약위원회 최종견해 이행을 담당하는 의장과 보고관인 우리는 2017년 10월 위원회의 제62차 회기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제4차 정기보고서를 검토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최종견해(E/C. 12/KOR/CO/4)에서, 사회권규약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최종견해 18(a), 23 및 41 문항의 권고 이행 조치를 18개월 이내에 서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최종견해 후속절차에 따라 2019년 4월 대한민국 정부의 후속보고서(E/C. 12/KOR/CO/4/Add.1) 제출을 환영합니다. 위원회는 2019년 10월 제66차 회기에서 후속보고서를 검토하였으며, 아래의 평가결과에 대해 대화하고자 합니다:

**문항 18(a) 기업과 인권 : 진전 불충분.** 당사국은 후속 보고서에서 기업과 인권영역에서 이행한 다양하고 중요한 조치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인권)실천·점검을 시행하는 법적 의무” 수립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는 아직 이행되고 있지 않으며, 국내법에 (인권)실천·점검 강제력 원칙을 부여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거나 계획수립이 되지 않았다. 위원회는 차기 정기 보고서에 당사국이 앞서 언급한 법적 의무를 수립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과 실제 법 적용에 대한 정보 또한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문항 23 차별금지법 : 진전 불충분. 위원회는 특히 국가인권위원회 강화를 위해 법안 제출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취한 조치들을 환영한다.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당사국이 차별에 관한 모든 금지 사유를 포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않았고, 가까운 미래에 그러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 없다는 것은 명백하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들을 규약 이행에 대한 차기 정기보고서에 제공할 것을 요청한다.

문항 41 노조 할 권리 : 진전 불충분. 복수노조와 단체교섭에 관한 권고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와 “부당노동행위 조사의 혁신안” 등의 조치에 주목한다. 그러나 받은 정보에 따르면,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단체교섭권과 파업권을 지속적으로 저해한다.

노조 결성 및 가입, 노조 활동에 자의적 개입 예방에 관한 권고와 관련하여, 당사국의 후속보고서에 “해직된 노동자와 실업자를 포함한 노동자와 공무원이 결사의 자유를 향유하는데 제약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후속보고서에 비정규직이 노조를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와 관련한 위원회의 우려사항이 해소되지 않은 사실에 우려한다. 이에 더하여, 제공받은 정보에 따르면, 결사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는 노동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동조합 및 노사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지만, 제한된 조건은 유지된다.

ILO 협약 87호와 98호 비준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취한 조치와 계획을 환영하나 비준을 위한 시간계획에 대한 정보 부재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차기 정기 보고서에 위원회의 최종견해 41에 관한

권고 이행 진전 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출할 것을 요청합니다.

위원회는 규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와 건설적인 대화를 지속할 것을 기대합니다.

귀하에 대한 경의를 표합니다.

Renato Zerbini Ribeiro Leao  
의장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위원회

Sandra Liebenberg  
후속조치 보고관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  
위원회